

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☐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입법으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료화장실 지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“동 조례 폐지”

☐ 검토의견

-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